

중요도 및 중요도계수(제56조 제2항 관련)

중요도	특	1	2	3
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	1.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· 외국공관· 소방서· 발전소· 방송국· 전신전화국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. 종합병원,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	1. 연면적 1,000㎡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· 외국공관· 소방서· 발전소· 방송국· 전신전화국, 중요도(특)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. 연면적 5,000㎡이상인 공연장· 집회장· 관람장 · 전시장· 운동시설· 판매시설· 운수시설(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) 3. 아동관련시설· 노인복지시설· 사회복지시설· 근로복지시설 4. 5층 이상인 숙박시설 · 오피스텔· 기숙사· 아파트· 교정시설 5. 학교 6.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, 기타 연면적 1,000㎡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(특)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	1. 중요도(특), (1), (3)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	1. 농업시설물, 소규모창고 2. 가설구조물
중요도계수	1.5	1.2	1.0	1.0

비고: 중요도(특)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.